

속초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7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7. 9. .

제 출 자 : 속 초 시 장

1. 의결주문

- 속초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- 보육시설 지원확대로 고질의 보육인프라 구축하여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 및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사회적 투자 확대
- 취약보육 우선 실시, 보육비용 지원 확대 등 보육환경 및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보호자 양육 및 가계비 부담 경감 등을 통해 출산장려 적극 유도
- 효율적인 보육정책을 도모하기 위한 자발적인 시민참여 유도 및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보육정책위원회 자발적인 시민참여 확대 보완 (안 제5조제2항)

- 1) 효율적인 보육정책을 도모하기 위해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 “보육교사 대표자”와 “보호자 대표”는 공개 모집에 의거 선정된 자로 위촉하도록 함.

나. 공립보육시설 설치·운영 신설 (안 제4장 신설)

- 1) 공립보육시설 위탁운영이 가능하며,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 선정 및 운영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.

다. 보육시설·아동별 지원규정 보완 (안 제22조제1항)

- 1) (보육시설 지원) 보육시설의 설치, 보육교사 인건비, 보육시설종사자 복지증진비, 차량운영비 등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육시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
- 2) (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등)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아동 보육료, 셋째자녀 보육료, 영유아 건강검진비 등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

라. 취약보육 우선 실시 및 특수보육 실시시설 비용지원 신설

(안 제17조제3항, 제23조 신설)

- 1) 공립보육시설 취약보육 우선 실시(안 제17조제3항)
- 2) 취약보육 및 방과 후, 휴일, 24시간 등 특수보육 실시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

- 1) 「영유아보육법」 제6조, 제24조, 제26조, 제36조 (10쪽 ~ 11쪽)
- 2)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0조, 제27조 (11쪽)

나. 예산조치 : 2008년도 당초예산 계상 계획

다. 기 타

- 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 (6쪽 ~ 9쪽)
- 2) 관련공문 사본(강원도) : 별첨 (12쪽)
- 3) 입법예고(2007. 7.27 ~ 8.16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속초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속초시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각호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, 제2호 및 제3호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된 자를 위촉한다.

제4장 및 제5장을 제5장 및 제6장으로 하고, 제17조를 제22조로 하고, 제18조를 제24조로 하고, 제19조를 제25조로 하며, 제4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장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

제17조(설치) ①시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립보육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보육시설의 명칭은 ○○어린이집으로 한다.

③시장은 공립보육시설에서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.

제18조(위탁운영) ①시장은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, 개인에게 무상으로 위탁하여(수탁받아 관리·운영하는 자를 “수탁자” 라 한다) 관리·운영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시설장이 되어 운영하여야 한다.

②수탁자 선정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.

제19조(수탁자 선정기준) 수탁자 선정시 심의항목에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,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, 보육시설 운영계획, 대표자 및 보육시설의 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
제20조(운영위탁의 취소) ①시장은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수탁자가 관계 법령, 조례 및 위탁관리계약을 위반하였을 때
2.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가 심하여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
3.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
4. 기타 공익상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

②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수탁자는 각종 시설과 장비·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

제21조(위탁기간 등) ①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.

1. 천재·지변 그 밖의 재해로 관리위탁된 행정재산등을 운영하지 못한 경우
2. 시장의 귀책사유로 수탁자가 일정기간 재산사용의 제한을 받은 경우

②위탁방법은 공개경쟁에 의한다.

제22조(종전의 제17조)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2조(비용의 보조) ①시장은 전 보육시설에 대한 아동별 지원기준 및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기준을 정하고, 이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육료 및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“국민기초생활보장법”에 의한 수급권자의 아동 및 저소득층·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
2. 시간연장 및 방과 후 아동보육료
3. 영·유아의 건강검진비
4.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(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생후 24개월까지)
5. 보육시설의 설치, 증·개축 및 개·보수비
6. 보육교사 인건비

7. 교구·교재비
8.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
9.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
10. 보육교사 출산휴가 대체 인력비
11. 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증진비
12. 보육시설 차량운영비
13. 기타 시장이 영·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

제5장에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3조(특수보육시설에 대한 보조) 시장은 취약보육 및 방과 후, 휴일, 야간(24시간) 보육 등 특수보육 실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
제24조(종전의 제18조)중 “제17조제2항”을 “제22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6장에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6조(준용)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 관계법령 및 속초시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2조 내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08. 1.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위·수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한 위·수탁 계약으로 본다. 다만, 위·수탁협약서에 의한 계약기간 종료시에는 효력을 상실한다.
- ③(다른 조례의 폐지) 「속초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」는 이를 폐지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구성) ① (생략) ②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 1. ~ 5. (생략) ③ (생략) <신설>	제5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위원회 위원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, 제2호 및 제3호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된 자를 위촉한다. 1. ~ 5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제 4 장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제17조(설치) ①시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립보육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②보육시설의 명칭은 ○○어린이집으로 한다. ③시장은 공립보육시설에서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. 제18조(위탁운영) ①시장은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, 개인에게 무상으로 위탁하여(수탁 받아 관리·운영하는 자를 “수탁자”라 한다)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시설장이 되어 운영하여야 한다. ② 수탁자 선정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. 제19조(수탁자 선정기준) 수탁자 선정시 심의 항목에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,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, 보육시설 운영계획, 대표자 및 보육시설의 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
현행	개정안
<u><신 설></u>	<u>제20조(운영위탁의 취소) ①시장은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</u> <u>1. 수탁자가 관계 법령, 조례 및 위탁관리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</u> <u>2.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가 심하여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</u> <u>3.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</u> <u>4. 기타 공익상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</u> <u>②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수탁자는 각종 시설과 장비·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</u> <u>제21조(위탁기간 등) ①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.</u> <u>다만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에 연장할 수 있다.</u> <u>1.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관리위탁된 행정 재산 등을 운영하지 못한 경우</u> <u>2. 시장의 귀책사유로 수탁자가 일정기간 재산 사용의 제한을 받은 경우</u> <u>②위탁방법은 공개경쟁에 의한다.</u>
<u>제 4 장 비용의 보조 등</u> <u>제17조(비용의 보조) ①시장은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육시설 등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</u>	<u>제 5 장 비용의 보조 등</u> <u>제22조(비용의 보조) ①시장은 전 보육 시설에 대한 아동별 지원기준 및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기준을 정하고, 이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육료 및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</u>

현행	개정안
② (생략) <신설> 제18조(보육시설 폐쇄 등) 시장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반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내 시설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.	1. <u>보육시설의 설치, 증·개축 및 개·보수비</u> 2. <u>보육교사 인건비</u> 3. <u>교구·교재비</u> 4. <u>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</u> 5. <u>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</u> 6. <u>“국민기초생활보장법”에 의한 수급권자의 아동 및 저소득층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</u> 7. <u>시간연장 및 방과 후 아동보육료</u> 8. <u>영·유아의 건강검진비</u> 9. <u>셋째이후 자녀 보육료(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생후 24개월까지)</u> 10. <u>보육교사 출산휴가 대체 인력비</u> 11. <u>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증진비</u> 12. <u>보육시설 차량운영비</u> 13. <u>기타 시장이 영·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</u> ② (중전의 제17조제2항과 같음) 제23조(특수보육시설에 대한 보조) 시장은 취약보육 및 방과 후, 휴일, 야간(24시간) 보육 등 특수보육 실시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 제24조(보육시설 폐쇄 등) 제22조제2항

현행	개정안
<u>제 5 장 보 칙</u> 제19조(시행규칙) (생략) <u><신설></u>	<u>제 6 장 보 칙</u> 제25조(시행규칙) (종전의 제19조와 같음) 제26조(준용)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<u>영유아보육 관계법령 및 속초시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.</u>

관련법규 발췌

【 영유아보육법 】

제6조 (보육정책위원회) ①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·사업, 보육지도 및 시설 평가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, 특별시·광역시·도 및 시·군·구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. 다만,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보육정책위원회 및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은 보육전문가,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,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,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.

③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·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4조 (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등) ①보육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.

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·공립보육시설을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.

③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
제26조(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)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영아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
②여성가족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취약보육을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36조 (비용의 보조 등)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설치, 보육교사의 인건비, 초과보육 운영경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·운영, 보육 시설 종사자의 복지증진, 취약보육의 실시등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.

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】

제20조 (사용·수익허가) ①행정재산등은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.

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·수익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. 다만,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허가할 수 있다.

1.허가의 목적·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

2.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 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·수익을 허가하는 경우

제27조 (행정재산등의 관리위탁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외의 자에게 당해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거나, 당해 행정재산등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.

③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④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, 관리위탁기간,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충당, 이용료의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, 그 밖의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